

탄소소재 적용 농기계산업 육성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전북지역 탄소소재 적용 중소·중견기업의 중장기 사업화 전략 확보 및 상용화 성공모델 제시를 위한 탄소소재 적용 농기계산업육성 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북도내 탄소 복합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안내에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1. 사업개요

- 전북지역 탄소소재 적용 탄소소재적용 농기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중장기 사업화 전략 확보를 위한 공정개선 및 시제품제작지원 수요를 접수 받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역량 강화 및 탄소소재 적용 도내 산업육성 확대
- 지원규모 : 금450,000천원
 - 공정개선 : 1개 기업, 최대 300,000 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이상, 단 현금부담은 10% 이상)
 - 시제품 제작 : 3개 기업, 최대 50,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이상, 단 현금부담은 10% 이상)
- ※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행기간
 - 공정개선 : 협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 시제품 제작 : 협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2. 지원내용

- 전북지역 내 탄소소재 적용 관련 중소·중견기업 중 탄소소재 적용 방위 산업관련 제품을 제조,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지원분야

- 공정개선 : 탄소소재 활용 농기계산업 적용 제품 제조, 생산 공정 최적화 및 설비개선 등 공정개선 지원
- 시제품 제작 : 탄소(섬유),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하여 농기계산업 적용되고 있는 또는 적용 예정 부품 발굴 및 성형, 가공 및 시공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3. 신청자격

신청기업

- 전북지역 내 탄소소재 적용 농기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지원분야 사업 영위 도내 기업 중 <최근2년> 탄소소재 공정라인 기투자 및 신규투자 기업으로 한정
 - 기업 전략기술에 대한 전략제품 혹은 공정기술개발을 요하는 기업
 - 단기적으로 공정개선을 통한 제품개발을 요하는 기업
 - 긴급한 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시제품 제작지원을 요하는 기업
 - 사업종료 후 사업성으로 매출과 신규고용창출 발생을 목표하는 기업
 - 자체 R&D혁신역량이 있고 시장창출 능력 및 신산업창출능력이 있는 기업 우선 지원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4월 24일(월) ~ 2023년 4월 28일(금)

- 접수 후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기업 및 부품 선정평가 진행

신청방법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기술수요조사서 및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이메일 접수

사업 공고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tech.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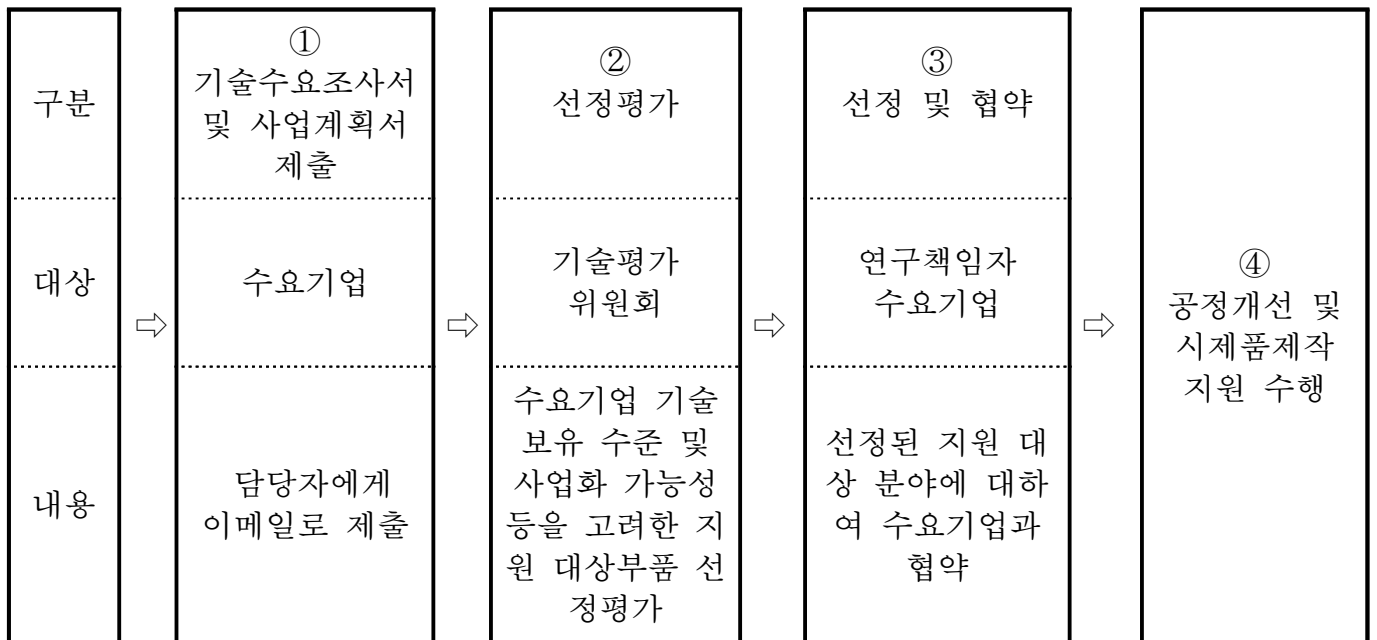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두영 (063-210-3770, duychoi@kitech.re.kr)
- 위치 : (548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지정서식	서식 1. 기업지원 지원신청서	필수
	서식 2.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수
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수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2021년~2022년분) * 업력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필수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비교견적서, 도면 및 계약서 등)	필수
	기타 제품설명 또는 실적 증빙 관련자료	필요 시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① 사업계획서 접수
 - 수요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② 선정평가 : 기술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구성을 통한 오프라인 평가 진행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서면 평가)
 - 수요기업 기술보유 수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개선 및 시제품제작 지원대상 평가
- ③ 선정 및 협약 : 연구책임자, 수요기업
 - 선정된 공정개선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대상에 대하여 수요기업과 협약 체결
 - 협약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별도 통보
- ④ 공정개선·시제품제작 지원 수행 및 결과보고 : 연구책임자, 수요기업
 - 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및 시제품제작 종료 보고서 제출

6. 기타사항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와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함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될 수 있음
- 지원종료 후 실시되는 성과조사(매출, 수출, 고용 등) 등의 자료요청 시 선정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환수법)이 시행(2020.1.1.)됨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금품(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청구 하거나 원래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지원금, 출연금 등)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이 환수(이자 포함)되고, 최대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제재부가금

- 허위 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5
-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3
-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2

6. 문의처

□ 사업 총괄 및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E-MAIL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두영 수석연구원	duychoi@kitech.re.kr

붙임.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1부. 끝.